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0. 2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10.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확대 및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민기)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불필요한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항)
-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영등포구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안 제2조제2항)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에서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안 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3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 나. 위원 구성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외(안 제2조제2항제5호)
- 다.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확대 및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9.8~2016.9.28,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2016.9.13 개정)되어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 주민참여감독대상 상한 금액 삭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계약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담당주사”를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를 “영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심의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수당·여비·심사수당”을 “수당·여비”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구 공무원”으로, “회의에”를 “위원회 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u>계</u>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u>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이하"구"라 한다)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등교육법</u>」에 따라 대학에서 <u>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u>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u>으로서 <u>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u>이 <u>풍부한 사람</u> 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u> 4. 「<u>건설기술 진흥법</u>」에 따른 해당 분야 <u>건설기술자</u> 또는 「<u>국가기술자격법</u>」 등 <u>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u> 5. <u>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관</u>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u> ----- -----.</p> <p>② <u>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u>하며, 위원은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u>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런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 중 당연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

-----.

③ -----
----- 계약업무 담당팀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

영 제107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회의
----- 위
원회의 -----

선임한다.

⑤ ~ ⑦ (생략)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한다.

1. 하수공사
2. 보안등 공사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 3. 보도블록 설치 공사
- 4.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 5.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증
·개축공사
- 6. 공중화장실 공사
- 7. 공원녹지관련 공사
- 8. 교통·주차시설 공사
-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실 2014.02.27>
-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

----- 수당·여비
-----.
---- 구 공무원-----

위원회 회의에-----
-----.
<삭 제>